

# 大學圖書館情報源으로서의 學位論文

(Thesis & Dissertations as the University  
Library Resources)

尹 炳 泰  
忠南大學校文科大學  
圖書館學科 教授

## 目 次

- |             |                 |
|-------------|-----------------|
| 一. 緒 言      | 五. 學位論文의 保存과 運用 |
| 二. 定義와 特性   | 六. 結 言          |
| 三. 學位論文의 收書 | 參考文獻            |
| 四. 學位論文의 整理 |                 |

### 一. 緒 言

오늘날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一次的情報이면서도 다루기 힘들고, 또 거치장스러운 情報資料중의 한가지가 學位論文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학위논문을 논제로하여 다룬 글은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나 아직 보지 못하였다.

아래에서는 학위논문이란 무엇이며 또 그 特性은 어떠한가를 알아 본 다음, 학위논문을 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떻게 收書하여 整理하며, 또 保存하고 運用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루어 봄으로서, 大學圖書館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학위논문의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생각한다.

### 二. 定義와 特性

#### 1. 學位의 定義

학위논문을 정의하기에 앞서 學位란 무엇인가에 대한 定義를 먼저 내려야 할것 같다. 이희승씨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분야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파악한, 심오(深奧)한 진리를 발표한 사람에게 그 자

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과정 및 절차를 거쳐 수여하는 칭호 학사(學士)·석사(碩士)·박사(博士)·명예(名譽)박사 등이 있음.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수여하되, 박사와 명예 박사에 한하여서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sup>1)</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앞 부분은 세계 어느나라에서의 학위에도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나중 부분은 우리나라에서의 학위의 종류와 수여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의 학위수여에 대하여는 <教育法>의 第 115 條에서 모두 6개 항목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으며, 第 116 條에서는 外國博士學位의 申告까지 규정하고 있다.<sup>2)</sup>

학위의 종류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니, 日本에서는 우리나라의 碩士에 해당하는 修士와 博士의 두가지로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Bachelor (學士)·Master (碩士)·Doctor (博士)의 세가지이되, 博士는 Doctor of Philosophy (Ph. D)가 그 主流이며, Doctor of Education, Doctor of Science 와 같은 研究學位(Academic degree)외에도 專門學位(Professional degree)인 Doctor of Medicine 등 여러가지 학위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Bachelor·Master·Doctor의 세가지 학위가 있기는 하나, Doctor of Philosophy는 반드시 最高의 학위는 아니며, 그 보다 높은 Doctor(一名 Superior Doctorate)가 따로 있다고 한다.<sup>3)</sup>

독일의 경우에는 Diplom(得業士)와 Doktor (博士)의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학위의 수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꼭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요건은 아닌 것 같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學點만 취득하면 論文없이도 碩士學位 취득이 가능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학위논문은 주로 박사학위논문이 중심이 되겠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석사학위 논문을 다루는데 더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1)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66), p. 3120.

2) 法律 第 3540 號 教育法. 1982. 3. 20. 改正.

3) 寺村由比子, “外國의 博士論文とその利用.” びぶろす, 第 22 卷 第 12 號, (1971. 12), pp. 9~17.

## 2.學位論文의 定義

학위논문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이희승씨의 정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 학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학술 논문”<sup>4)</sup>라고 간결하게 말한데서, 학위획득을 위한 학술논문임을 알 수가 있다. 학위논문은 획득하는 학위에 따라 다시 學士論文·碩士論文·博士論文으로 세분할 수가 있으며, 이 중 碩士學位論文은 영어로 Thesis, 博士學位論文은 영어로 Dissert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학위논문은 수여된 학위의 명칭과 전공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거니와, 국내에서 취득한 여부에 따라 국내박사 또는 外國博士學位論文이라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겠으며, 또 학위논문을 다루는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본교의 박사인가 타교의 박사인가에 따라 학위논문을 구별하여 부르면서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가 보인다.

## 3.學位論文의 特性

학위논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들자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지않나 생각한다. 여기에서 드는 특성은 주로 박사학위논문 위주로 생각하나 석사학위논문에도 물론 해당된다 하겠다.

ㄱ. 학위논문의 연구진행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진행된다.

ㄴ. 학위논문의 내용은 대학원의 最終 연구과정에서의, 독창적인 연구나 知識에 공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ㄷ. 학위논문은 그 내용을 권위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심사된 것이다.

ㄹ. 제출되어 통과된 학위논문은 그 생산량이 매우 소수이다. 기껏해야 1~200부가 고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ㅁ. 학위논문은 공간(公刊)되는 경우가 있으나 희귀하다. 따라서 판매 배포에 제한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은 공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공간을 2년 이내에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실현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예가 더러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ㅂ. 학위논문에 대한 全國的 혹은 國際的 統整番號制가 一律化되지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文敎部의學位登錄申告制가 제도화되어 있기는

4) 이희승 편, 前掲書, p. 3120.

하나, 學位論文自體에 統整番號가 부여된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또 國會圖書館에서의 統整番號가 있기는 하나, 이 番號가 國立中央圖書館이나 他 大學校圖書館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못들었으며, 하물며 國際的次元에서의 統整化는 미급인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스. 학위논문의 外形의裝訂은 다양하며, 記述된 形式 역시 다양하다. 등을 들 수가 있겠다.

### 三. 學位論文의 收書

學位論文의 生産量이 적음과 公刊이 드뭄에 따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入手方式은 매우 多樣한 것 같다. 따라서 그 收書의 實務 역시 多樣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예이지만 학위논문에 대한 장서정책을 우선 살펴볼까 한다.

#### 1. 學位論文의 藏書政策

1977년에 발행된 Futas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Iowa state University에서의 학위논문의 수서정책은 “本校의 博士學位論文은 2部를 保存하며, 그 중 1部는 製冊하여 完全 編目하고 藏書로서 統合하고, 남은 1部는 文書資料로서 年代順으로 製本하여 特定集書部에다 保存한다고 定하고 있다. 또 他大學의 學位論文은 冊子로 자주쓰인다는 지적이 없었던 마이크로 필름으로만 구입하고, 州內의 University of Iowa 도서관과 University of Northern Iowa 도서관과도 협력하여 國內의 다른 도서관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고려하여 보고 필요한 논문을 구한다고 한다. 도서관에서는 個人이 필요한 학위논문은 수입하지 않으며, 個人은 University Microfilms, Inc.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冊子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구하도록 하고 있다”<sup>5)</sup>고 정하고 있다.

한편 University of Wyoming 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한 個人을 위해서 學位論文의 경우에는 구입하지않고 있는바, 이는 University Microfilm社의 原則이 *Dissertation Abstracts*에 수록된 논문은 상호대차가 불가능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또 複寫物이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5) Elizabeth Futas, ed., Library Acquisition Policies and Procedures(Phoenix, Ariz. :Oryx Press, 1977), p.190.

部科의 配當豫算內에서 會計하되, 이런 學位論文들은 編目하여 도서관의 永久的인 藏書의 一部로 하여, 未來의 円滑한 活用に 提供한다”<sup>6)</sup> 라고 定하고 있다.

이 두가지의 예를 보면,

- ① 本校分 學位論文의 처리
- ② 他校分의 入受에 따른 豫算과 協力
- ③ 入受分의 整理
- ④ 個人의 私用に 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 2. 學位論文의 選書

大學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을 購入코자 할 때에는 選書의 必要가 생긴다. 冊子本의 경우에는 다른 藏書의 選書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되겠지만, 만일 마이크로資料로서 購入코자 할 때에는 그 判讀과 擴大複寫裝置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점에 대하여는 李炳穆교수의 저작<sup>7)</sup>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選書에 必要한 二次情報源은 省略 한다.

## 3. 入手業務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學位論文의 入手方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納本入手, ② 受贈入手, ③ 交換入手, ④ 購入入手 등 여러가지를 들 수가 있다. 아래에 項을 나누어 略述한다.

가. 納本入手~學位論文提出者가 大學院의 學務當局에 提出한 論文의 原本 및 副本들을 永久保存하는 한편 利用에 提供하고자 圖書館에 納本함으로서 入手하는 경우이다. 事務的인 節次로는 保管轉換入手와 비슷하나 성격은 다르다. 도서관에서는 一定한 部數는 등록하여 장서로 하는 한편 必要部數以外的은 交換 또는 寄贈資料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 外國에서나 國內에서 學位를 取得한 教授要員들의 任用時에 提出한 學位論文들도 教務當局을 통하여 納本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간에 教務當局의 한

6) 上揭書, p. 322-323.

7) 李炳穆編, 資料選擇構成論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84) pp. 127-138.

書類로서 保存하기 보다도 圖書館에 納本 備置케 하여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圖書館에서는 納本要求를 強行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나. 受贈入手~學位取得者가 자기의 學位論文을 圖書館에 寄贈함으로서의 入手를 말한다. 生産量이 비록 적다하더라도 出身母校라던가 그 밖의 理由로 寄贈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편 未公刊된 學位論文일지라도 圖書館藏書로서 꼭 必要한 경우에는 圖書館側의 積極的인 寄贈依頼의 要請에는 대개 應하는 것이 常例인 것 같다.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受贈한 學位論文에 대하여는 寄贈者에게 대한 禮狀은 꼭 보내어야 할 것이다.

다. 交換入手~圖書館에서 入手한 本校 또는 他校의 學位論文中에서 藏書로 登錄한 나머지의 論文들을 一定한 他圖書館에 交換資料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相對校에서 이와 같은 交換行爲로서 보내어 온 學位論文을 入手한 것이 交換入手이다. 交換行爲에서 어려운 點은 論文提出者의 提出部數가 20~50 部 등 制限이 되어 있으므로, 비록 國內의 경우만 하더라도 골고루 交換行爲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點이다. 이런 경우에는 圖書館에서 論文提出者에게 論文製作의 實費를 一部負擔하여 必要한 部數를 確保한다던가, 아니면 所要部數를 複寫生産하여 活用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우리나라의 教育大學院에서는 相互間에 論文交換이 円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交換된 論文을 圖書館에서 등록 정리하는 경우에는 交換入手에 준한다 하겠다.

라. 購入入手~圖書館藏書로서 꼭 必要한 學位論文中 앞의 세가지 入手方法으로 入手할 수 없을 때에는 購入에 의한 方法이 있다. 國內의 書店에서 이미 公刊된 論文을 購入한다든지, 혹은 古書店에서 모아놓은 論文속에서 必要한 論文만 골라서 購入하는 方法도 있겠거니와, 外國의 論文일 경우에는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이나 그밖의 機關을 통하여 冊子型이나 마이크로 型의 論文을 入手하는 方法도 있겠다. 어느 경우이든지간에 選書의 過程은 必要하며, 購買行爲에 따른 豫算措置나 事務的인 節次는 不可缺하다 하겠다. 특히 圖書館藏書로 購入時에 留意할 일은 特定個人의 一時的利用만을 위한 購入行爲는 避할 일이며, 教育課程이나 研究와 連結된 繼續的인 活用이 可能한 경우로만 購入을 限定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마. 保管轉換入手~예로 教育大學院 自體에서 등록·정리·보관·이용중이던 학위논문이 도서관으로 保管轉換한 物品管理法上 또는 類似한 경우의 入手行爲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引繼·引受側에서 서로 精確한 目錄의 作

成・保管이 必要하다.

바. 數量更正入手~圖書館에서 合綴 製册된 論文을 分册하거나, 너무 얇기 때문에 保管・利用이 어려울 경우에 合册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入手 行爲이다.

#### 4. 登錄業務

學位論文의 登錄業務는 ① 登錄區分, ② 記帳, ③ 捺印, ④ 統計로 나누어 다룰 수가 있겠다. 이 登錄業務는 다른 藏書의 경우와 비슷함으로 筆者의 別著<sup>8)</sup>로 미루겠거니와, 特히 言及할 것은 登錄區分時에 管理區分을 “學位論文”이라고 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 圖書館에서의 事情에 따라 決定할 일이라 하겠다.

### 四. 學位論文의 整理

學位論文의 整理는 다른 藏書의 整理와 相通한 方式에 의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學位論文이기에 整理에 있어서 다른 藏書들과 特異한 點도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이를 項을 나누어 다루어 본다.

#### 1. 目錄과 編目

大學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을 利用者에게 쉽사리 利用하게 하려면, 利用者들을 위한 몇가지 制度的裝置가 必要하다. 利用者가 學位論文에 接近하는 方法으로는 ① 直接 論文에 바로 接近하는 方法, ② 司書의 도움을 받아 接近하는 方法, 그리고 ③ 目錄을 通하여 間接的으로 接近하는 方法 등을 들 수가 있겠다.

學位論文의 數量이 아주 적을 때에는 ① 과 ② 의 方法도 效果가 크겠으나 學位論文의 量이 國內의 경우만 하더라도 年間 도서관마다 2000~2萬件이나 增加하는 추세로서는 ③ 의 方法 以外에는 解決方法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우선 일어나는 문제가 目錄의 政策이라 하겠다.

가. 學位論文目錄의 政策~ 이는 다시 아래와 같이 細分하여 생각할 수

8)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研究(서울: 利久出版社, 1983), pp. 60~63.

가 있다.

(1) 編目者~ 누가學位論문을編目할 것인가. 만일集中式整理方式에 있어서는整理部署에서 담당할 것이고,學位論문을 다른藏書와分離하여登錄區分 및 管理區分하는 경우에는管理하는部署(즉學位論文室과 같은 곳)에서獨立하여整理할 수도 있겠다. 특히後者의 경우에는 다른藏書의整理部署와의協力과調整이必要不可缺하다 하겠다.

參考로筆者가 1983년에 행한 연구에 따르면,大學圖書館에 있어서學位論문을分業化하고 있는現況을 보면 아래表와 같다.<sup>9)</sup>

表 學位論文의 分業化 館種別 集計

도서관의 종류	서울시내 大學校	地方의 大學校	教育大 單科大	專門大	計
전체해답 관수	34	35	20	32	121
분업하는 관수	11	10	5	9	35
%	32.3	28.5	25.0	28.1	28.9

이를 보면 29%에 가까운 35個도서관에서分業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編目規則~ 어떤編目規則을採擇할 것인가, 그規則을一部修正使用할 것인가, 아니면自館에서 새로規定化할 것인가.

(3) 接近點의 種類~利用者가學位論문을 찾을 때에豫想되는接近點은 무엇인가. 著者名·論文名·主題名·專攻學科名·授與校名·取得年度·論題의 主要語 등 그 밖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4) 目錄의 形態~ 카드·冊子·電算機出力 어느 쪽인가.

(5) 目錄作成與否~本校 또는他校의論文抄錄集으로 대신할 것인가.學位論文目錄과 같은二次情報源으로代置할 것인가. 만일 이들로써代置한다면學位論文의排架와檢索手段과의連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學位論문을 위한目錄의 形態~앞에서도言及하였지만도서관에 있어서의在來式의카드目錄이나冊子目錄 그리고電算化한映示나出力과 같은自動화目錄도바람직하지만,全國的 또는國際的인規模로統整된目錄의活用도可能하지않나 생각된다. 例로서國會圖書館의《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총목록》이나 그 데이터 베이스를 들 수가 있겠다.

9) 尹炳泰, 「한글主題名標目表」의 研究(서울: 利久出版社, 1983), p. 26.



## 2. 書誌記述

學位論文의 書誌記述은, 學位論文의 發行形式이 대개의 경우 單行본인 까닭이기 때문인지, 單行本에 準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英美目錄規則》의 第二版을 보면 學位論文의 形態는 多樣하여, 地圖學的資料·畫像資料·機械可讀型 데이터 파일·原稿·마이크로資料·映畫 및 錄畫物·樂譜印刷冊子, 그리고 錄音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學位論文의 書誌記述을 一律的으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가. 書誌記述의 典據~위에서 言及한 書誌的 形態의 多樣함으로 인하여, 學位論文의 書誌記述에 있어서는 標準的인 典據가 必要하다. 國際的인 書誌記述의 標準으로 ISBD(G)·ISBD(M)등과 같은 基準이 있지만 學位論文에 대하여 規定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이 ISBD의 基準精神을 살리면서 새로 制定한 《韓國目錄規則(KCR)》의 改正 第3版<sup>11)</sup>과 《英美目錄規則(AACR)》의 第2版은 學位論文에 대한 書誌記述의 註記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이 두가지 規則은 學位論文의 書誌記述을 위한 典據가 된다 하겠다.

나. 定型的 記述部의 書誌記述~學位論文의 書誌記述에 있어, KCR-3이나 AACR-2에서의 定型的 記述部에 있어서의 書誌記述에 대한 問題點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學位論文의 形態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資料(또는 出版物의 類型) 特定 細部 領域”에서 記載하는 事項이 다를 뿐인 點이 AACR-2에서 規定되고 있을 뿐이다.<sup>12)</sup>

다. 註記의 記述~註記는 前記한 定型的 記述部에서 記述하지 못하였거나 補完的으로 記述하는 部分이라 하겠다. 이 註記의 記述에 대하여 KCR-3과 AACR-2에서는 서로 다르게 規定하고 있다.

(1) KCR-3 ~ 《韓國目錄規則》 3版에서는 “1.6.3.13 (學位論文에 관한 주기)”에서 아래와 같이 規定하고 있다.<sup>13)</sup>

1.6.3.13 (學位論文에 관한 주기)學位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출된 學位論文은 東書의 경우는 程度를 나타내는 學位名稱(예 : 박사, 석사, 등)

10)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Prepared b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icago : Am. Lib. Assn., 1978), p. 585. (AACR-2로 略한다)

11) 韓國圖書館協會·制定,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標目울림指示篇 (서울 : 同協會, 1983) (KCR-3으로 略한다)

12) AACR-2, p. 30.

13) KCR-3, p. 80.

에 ‘학위논문’이란 말을 덧붙인 어귀 다음에學位授與大學(校)名과授與年을 붙임표(一)를 앞세워附記하고,洋書의 경우는 영어로 ‘Thesis’란 말 다음에 ‘M. A.’ 또는 ‘Ph. D.’ 등의 학위명의略稱(만약 이들 약칭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doctoral’ 또는 ‘master’s’ 등의完全綴字)을 원괄호(( ))로 묶어附記하고, 다시學位授與大學校名과授與年을 붙임표( )를 앞세워附記한다.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78.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1959.

Thesis (Ph. D.)—University of Michigan, 1960.

Thesis (M. A.)—Columbia University, 1970.

Thesis (doctoral)—Freie Universität, Berlin, 1973.

만약 그 도서가 학위논문 제출시에 취하는學位論文的體裁를 갖추지 않은 다른版本일 경우에는 그의書誌의來歷을註記한다.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의公刊版임. 원제는:世宗朝集賢殿의機能에 관한研究

Originally presented as the author's thesis (Ph. D. University of Michigan) under title: Anatomy of book collector

(2) AACR-2 ~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의 第2版에서는 위의 KCR-3과는 달리學位論文的註記를一般規則과資料의類型別로 나누는各章別의註記領域條項으로 나누어서規定하고 있다.

(一) 一般規則의 “1.7B13.學位論文”에서는說明없이 아래와 같은例示로만 그치고 있다.

Thesis (M. A.)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二) 圖書, 小冊子 및 印刷한一枚物에서는 “2.7B13.學位論文”에서 비교적 자세하게說明하면서例示하고 있으니, 이는 다른類型的의註記로부터도 그模範으로參照되어 있는條項이므로全文<sup>14)</sup>引用하여 본다. (假譯임).

2. 7B13. 學位論文 記述할資料가學位取得의一部要件으로서提出된學位論文(dissertation 또는 thesis)이라면, (英語의 thesis를 써서)學位論文的表示를 하고 이어서著者が請求한學位의簡略한表示(例로 M. A. 또는 Ph. D., 혹은 이들略語가不適

14) AACR-2, pp. 73~74.

합한學位論文에서는, *doctoral* 또는 *master's*), 論文이 提出된 機關 또는 學部의 名稱, 그리고 學位의 授與年을 記載한다.

Thesis (Ph.D.) — University of Toronto, 1974.

Thesis (M.A.) — University College, London, 1969.

Thesis (doctoral) — Freic Universität, Berlin, 1973.

出版物이 學位論文의 改訂 또는 要約이라면, 그 事實을 나타낸다.

Abstract of thesis (Ph.D.)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4.

學位論文이 請求者가 編纂한 原典이라면, 注記속에 請求者名을 包含한다.

Karl Schmidt's thesis (doctoral) — München, 1965.

出版物에 公式的인 學位論文表示가 없을 때에는, 書誌的沿革注記를 한다.

Originally presented as the author's thesis (doctoral-Heidelberg) under the title :

(ㄷ) 地圖學的資料는 3.7B13에서, 原稿는 4.7B13에서, 樂譜는 5.7B13에서, 錄音物은 6.7B13에서, 映畫와 錄畫物에 대해서는 7.7B13에서, 畫像資料에 대해서는 8.7B13에서, 機械可讀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는 9.7B13에서, 마이크로資料에 대해서는 11.7B13에서, 이들 資料들 自體가 學位論文일 때에는, 앞의 2.7B13에서 規定한 것과 마찬가지로 注記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sup>15)</sup> 다른 資料에서는 具體的인 例示가 없었지만, 樂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例示<sup>16)</sup>가 있었다.

Thesis (M.Mus.)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972.

Thesis (M.M.A.) — McGill University, 1971.

以上에서 든 KCR-3과 AACR-2의 學位論文이라는 事實에 관한 註記 以外の 다른 註記들은 다른 圖書나 資料의 경우와 同一함으로 言及을 않는다.

라. 標目올림指示~學位論文의 書誌記述에 있어 標目올림指示는 必要하다. 이 指示에 있어 ① 書名記入의 省略, ② 記載의 順序, ③ 番號 매김법, ④ 指示語의 文字와 形式, ⑤ 記載位置 등에 관해서는 典據한 書誌記述標準의 規定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다른 圖書 資料와 別로 差異가 없을 것 같다.

15) 上掲書, pp. 107, 122, 140, 160, 179, 198, 214, 245.

16) 上掲書, p. 140.

### 3. 接近點과 標目

利用者가 特定 學位論文에 接近하기 위한 接近點은 檢索과 識別이 可能한 標目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른 圖書 資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標目的 形式이나 그 選擇 역시 같다 하겠다.

다만 분류에 의한 주제검색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 그 대신에 主題名標目に 의한 字母順 主題檢索方式을 채택하였다면, 다음 4와 같은 主題編目과 主題名作業이 필요하게 된다.

### 4. 主題編目과 主題名作業

學位論文에 대한 主題編目は ① 主題名標目的 附與와 그에 관계되는 作業 즉 主題名作業과 ② 書誌分類와 主題名索引에 關聯되는 作業의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가. 主題名標目表~學位論文의 主題編目時에 어떠한 主題名標目を 附與할 것인가는 採擇하는 主題名標目表나 檢索語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다. 또 學位論文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主題名標目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圖書館의 編目政策에 따른다.

한 예로 콜롬비아大學校에서 參考奉仕를 主題로하여 博士學位가 授與된 論文이 있다고 한다면, 美國 議會圖書館의 主題名標目表(LC, SH)<sup>17)</sup>에서는

Reference services (Libraries)

Columbia University - Dissertations

의 두 標目を 附與할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또 *Library Literature*<sup>18)</sup> 에서는 學位論文에게는 主題名標目外에도

Library Schools - Thesis

아래에 전부 모아둔 것을 보면, 앞의 LCSH에서의 例示도 可能한 것 같으나, 大學名아래의 細目으로 學位論文을 매기는 主題名標目は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으며, 오히려 學位論文의 書誌綴이나 카드함을 別置하는 것이 바

17) U. S. Library of Congress. Subject Cataloging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 9th ed. (Washington, D. C. : Library of Congress, 1980)

18) Library Literature (New York : H.W. Wilson, 1983)

랍직 하겠다.

나. 主題名作業~主題名作業에 대하여는 李載喆<sup>19)</sup> · 筆者<sup>20)</sup> · Chan<sup>21)</sup> 그리고 그 밖의 著書에 더 자세함으로 약하거나와, 학위논문의 主題名作業도 다른 圖書資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면 되겠다.

## 5. 分類와 分類作業

學位論文의 分類는 書誌分類와 書架分類의 兩面에서 다를 수가 있겠으며, 分類를 위한 分類表의 문제가 따른다.

가. 書誌分類~字母順에 의한 主題接近을 하지않을 때 可能한 接近法의 하나가 分類順에 의한 主題接近의 方式이 있다. 이러한 主題接近을 위하여 書誌分類를 하여야하며, 그 補助手段으로 主題名索引과의 連結이 必要하다. 學位論文의 경우에도 다른 圖書資料와 꼭 같은 書誌分類와 主題名索引作業이 行할 수가 있으며, 대다수의 도서관에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sup>22)</sup> 하나 留意할 點은 書誌分類와 다음에 言及하는 書架分類는 꼭 一致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點이다. 만일 一致하더라도 자리수의 길고 짧은의 문제가 따른다는 點이 있음을 알아야하겠다.

나. 書架分類~書架分類는 學位論文을 排架하기 위한 函架作業의 一環으로서 行하여지는 分類를 말한다. 書誌分類와 書架分類를 위한 分類表가 同一할 때에는 分類記號의 長短調節이나 別置記號의 附與 등으로 書架分類를 끝맺을 수 있으나, 서로 다른 分類體系일 때에는 ① 同一分類表內에서 學位論文을 위한 補助的인 表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② 學位論文만을 위한 다른 하나의 書架分類表를 마련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아래 6의 “다”와 “라”에서 여기 ①과 ②의 예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 6. 函架記號와 文獻記號

函架記號는 個個의 學位論文에게 附與하는 固有의 識別記號라 할 수 있겠다. 이 函架記號의 機能을 들자면,

- 19) 李載喆, 주제명목록의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조지 피바디 사범대학, 1959)
- 20) 註 8 및 9 同書
- 21) Lois Mai Cha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8)
- 22) 註 9 同書, p. 22.

- ① 固有의 識別記號
- ② 排架位置의 決定
- ③ 利用者들의 請求用 請求記號
- ④ 利用과 返納에서의 識別
- ⑤ 返納時의 原位置로의 納架
- ⑥ 點檢時에 識別<sup>23)</sup>

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機能을 제대로 다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 ㉠ 記號의 構成이 簡明할 것.
- ㉡ 읽기 쉽고 識別이 可能할 것.
- ㉢ 記錄·記入이 簡單하고 쉬울 것.
- ㉣ 어떤 形態의 目錄에도 使用可能할 것.
- ㉤ 利用자가 쓰기 쉬울 것.

등의 要件이 있다.<sup>24)</sup>

가. 函架記號의 種類~學位論文을 위한 函架記號의 種類는 排架方式에 따라 固定式과 柔軟式(移動式·分類式,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固定式은 주로 入手順인 바, 그 中에서도 資料形態別 入手順이나 別置別 入手順이學位論文에 알맞지 않나 생각한다. 筆者가 서울大 行政大學院에서 行한 아래와 같은 예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 ① TM~本院의 碩士學位論文을 入手順으로 TM1, TM2와 같이
- ② TD~國內외의 博士學位論文을 入手順으로 TD1, TD2와 같이
- ③ TF~外國의 碩士學位論文
- ④ TN~國內의 碩士學位論文

柔軟式 函架記號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中 別置記號別 函架記號는 다른 圖書나 資料와 꼭같이 分類記號나 文獻記號, 등을 附與하되 가장 上端에 “석논·박논·학위” 등과 같은 別置記號만을 붙이는 方式이다.

나. 文獻記號~學位論文을 위한 文獻記號도 固定式·可動式 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可動式은 또 여러가지로 細分할 수가 있다. 아래에서는 高麗大學校와 忠南大學校에서의 實務例만 들어 본다.

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의 <<碩·博士學位論文分類表>>~ 高麗의 學

23) 註 8 同書, p. 214.

24) 上揭書, 同面

位論文 排架를 위한 補助表이다. 우선 1件的 論文에 대한 函架記號의 具體的인 例<sup>25)</sup>를 들어 본다.

- 대학원 …… ① 別置記號  
 0512 …… ② 分類記號  
 4K8 …… ③ 校別 ④ 大學院別 ⑤ 專攻別記號  
 6 …… ⑥ 入手順 文獻記號

① 別置記號~備置場所別로 “대학원·과학·의학” 등 分館別로 표시함.  
 ② 分類表~朴奉石의 《韓國十進分類表》 補正版<sup>26)</sup>에 의한 分類記號이며, 0510의 入手順記號 6은 高麗大學校 學位論文들이며, 0512는 國內 他校의 學位論文을 分類한 記號이다.

③ 校別記號~0512의 分類記號 아래 段에다 다음과 같은 番號(5以後는 入手順임)를 配當하여 學校를 區別함.

- 1 서울大學校
- 2 延世大學校
- 3 梨花女子大學校
- 4 成均館大學校
- 5 (以下 略)

④ 大學院別記號~校別記號에 붙여서 알파벳 大文字로 아래와 같이 定하고 있다.

- 一般大學院  
 A 法學·行政  
 B~F, P, Q, S, T, (略함)  
 Y 博士學位論文

- 特殊大學院  
 G 行政大學院  
 H~X (略함)

⑤ 專攻別記號~大學院別記號에 붙여 大學院의 各學科, 特殊大學院의 各專攻別을 아라비아 數字로 記號化한 것이다. 例로

- A2 ~ 大學院 行政學科  
 K4 ~ 經營大學院 財務論專攻

25)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業務指針(서울: 同館, 1982), p. 120.

26) 朴奉石, 韓國十進分類表, 補正版(서울: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1980)

등과 같으며, 特히 “Y 博士學位論文”에 대해서는 碩士學位論文처럼 處理하고 있다.

⑥ 入手順文獻記號~위 ③④⑤의 合成記號의 아래 段에다 아라비아數字로 入手順番號를 附與하고 있다.

라. 忠南大學校 附屬圖書館의 <<석·박사학위논문 분류표>><sup>27)</sup>~이 분류표는 事實上의 學位論문을 위한 書架分類表라고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다룬다. 忠南大에서는 學位論文은 論文室에 別置하고 있으며, 請求記號의 構成은 아래와 같다.

23 L 13    ① 大學別    ② 專攻別    ③ 學科別記號  
81 - 1    ④ 授與年度    ⑤ 入手順文獻記號

記號의 構成別 說明은 高麗大와 거의 같음으로 略하거나, 한가지 다른 點이 있다면 分類記號가 없다는 點이라 하겠다.

## 7. 裝備와 補修

學位論文 整理의 마지막 단계는 그 裝備이며, 必要한 경우에는 補修하여야만 納庫하여 運用케 된다. 아래에서는 다른 圖書 資料와 差異가 나거나 注意하여야 할 點만 다루어 본다.

가. 裝備~學位論文의 裝備에서, ① 函架記號의 記入에 있어서는 흰 책딱지(Label)에다 印字하는 것이 좋겠다. 딱지도 다른 圖書와 區別이 가능한 色을 들린 것을 쓰면 좋을것 같다. ② 論文을 貸出할 경우에는 ㉠ 책봉투 붙이기, ㉡ 책카드 넣기, ㉢ 期限票 붙이기 등이 必要하다.

나. 補修~本校의 學位論文으로서 圖書館에서 永久保存할 正本 1部는 納本當時부터 튼튼한 洋裝本을 要求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圖書館自體에서 保強製冊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學位論文의 여러 사람 分을 合綴 製冊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方法은 保存面에서는 效果가 있을지 모르나 利用面에서는 能率이 떨어짐으로 避해야 할 일이다.

27) 충남대학교 부속도서관 정리제, 석·박사학위논문 분류표(대전: 동관, [1983].) 油印物.



## 五. 學位論文의 保存과 運用

學位論文의 保存과 運用도 다른 圖書 資料와 大同小異하다. 運用 方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㉗ 閱覽, ㉘ 貸出, ㉙ 複寫, ㉚ 參考奉仕 그리고 ㉛ 書誌奉仕 등이 있다.

### 1. 納庫·排架와 保存

學位論文의 運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디에다가 學位論文을 備置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備置의 場所로서 豫測할 수 있는 곳은,

- ① 獨立된 論文室에 別置하는 것
- ② 參考室의 一隅에 開架排架하는 것
- ③ 書庫에 納庫하여 閉架 出納하는 것
- ④ 關聯 大學院·學科에다 備置하는 것

등이 있겠다. ①의 경우에는 開架와 閉架로 다시 細分할 수 있겠고, ③의 경우에는 다른 圖書와 混架하느냐 아니면 別置排架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閉架나 書庫에 納庫時에는 出納에 따른 問題가 더 생긴다. 學位論文의 增加速度로 보아서 別置排架하거나 獨立된 論文室에 別置하는 쪽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 2. 閱覽과 貸出

大學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의 閱覽과 貸出은 自校分の 副本이나 他校分에 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開架閱覽과 出納貸出이나 閱覽은 다른 圖書들과 同一하다 하겠다. 學位論文의 閱覽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交換對象에서 除外된 他校生이나 校外人士들의 利用이 자주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正確한 身元把握後의 利用許諾이 바람직하며, 특히 貸出 보다는 複寫提供이 나은 方法이라 하겠다.

### 3. 複寫와 撮影

學位論文은 研究의 참신성, 그밖의 理由로 他圖書館 또는 校內外의 利用者들이 複寫를 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圖書館에서 利用케 하였던 論

文의 副本들이 훼손하였거나 亡失하였을 때에는 原本을 複寫하여 補完하여야 할 경우도 자주 생긴다. 한편, 外國이나 國內에서 購得한 마이크로資料를 擴大複寫할 必要도 생긴다. 어떤 경우이던지간에 保存 및 利用하기 위한 複寫奉仕는 施行하여야 한다.

複寫를 위해서는 鮮明度나 寫率이 明確한 複寫機器의 選擇과 備置가 必要하며, 이들 機器들은 利用量에 따라 論文의 備置場所와 接近할수록 좋겠다. 때에 따라서는 學位論文(特히 博士學位分)을 마이크로型으로 撮影하여 交換資料나 販賣品으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論文著者에 대한 著作權法上の 補償이나 保護도 必要하다.

#### 4. 參考奉仕와 書誌奉仕

學位論문을 통한 參考奉仕中 가장 많은 것은 指向的質問에 해당하는 所在調査나 書誌的質問이 아닌가 생각한다. 質問에 回答하는 奉仕도 必要하지만, 教授나 研究員 그리고 各 學科에다, 入手한 學位論文의 速報를 提供하거나, 興味領域을 把握하여 選定情報配布(SDI)奉仕도 바람직하다.

學位論文의 整理過程에서 目錄은 自動的으로 生産되겠지만, 手作業이나 電算處理로, 要語(Key Word)에 의한 檢索도 可能하게 하는, 所藏論文에 대한 書誌作業과 그 奉仕도 必要하다.

### 六. 結 言

以上으로서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一次情報源이라 할 수 있는 學位論文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本論은 모두 4個部分으로 나누었으며,

① 定義와 特性에서는 學位의 定義와 學位論文의 定義를 먼저 나린 다음 學位論文의 特性 일곱가지를 들어 說明하였다.

② 學位論文의 收書에서는 藏書政策의 例를 미국의 경우를 引用하고, 購入時에는 選書의 過程이 必要함을 言及한 다음, 入手에는 納本·受贈·交換·購入·保管轉換과 數量更正入手등이 있음을 들었다.

③ 學位論文의 整理에서는 目錄과 編目, 書誌記述時의 註記 記述, 接近點과 標目, 主題名作業, 函架記號 등에 重點을 두고 다루었다.

④ 學位論文은 그 排架 備置場所에 따라 運用에 영향을 미치며, 運用方法

으로는 閱覽·貸出·複寫가 있으며, 參考書誌奉仕에서 留意하여야 할 點을 指摘하였다.

紙面關係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學位論文의 書誌統整에 대하여는 別稿로 미루기로 한다. (1984. 4. 21 稿了)

## 参 考 文 献

- Ash, Joan. " *The Exchange of Academic Disserta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30, no.3, (May, 1969), pp. 237~241.
- Boyer, Calvin James. **The Doctoral Dissertation As an Information Source.**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3.
- Futas, Elizabeth, ed. **Library Acquisition Policies and Procedures** Phoenix, Ariz.: Oryx Press, 1977.
- Patterson, Kelly, et al. " *Thesis Handling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21, no.3, (Summer 1977), pp.274~285.
- Stromeyer, R. " *Treatment of Dissertation in German Universities and Librarie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 XIV, no. 4, (July, 1960), pp. 160~166.
- 寺村由比子 "外国の博士論文とその利用" *びぶろす* 第22巻第12號, (1971. 12.), PP. 9 - 17 .